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고향사랑 기금
전출 근거 마련 등〉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5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4. 23.
3. 회 부 일 : 2025. 0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관련하여 ①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군·구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으로부터</u>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1. ----- ----- ----- ----- <u>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u>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u>사람에게</u>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 ----- ----- <u>사람 또는 법인에</u> -----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u> 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 ----- <u>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u>

모금·접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지 아니한 법인에----- ----. 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만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타인 또는 다른 법인의-----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 -----사람 또는 법인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생략)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사람 또는 법인-----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기부자별-----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

-----비용, 제4항
에-----
-----및 제5항
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에는-----.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주민</u> 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 7. (생략) ② (생략)	1. ----- ----- <u>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u> -----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법인의 고향사랑기부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 함)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부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데 법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실적을 제고하여¹⁾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4년 8월말 기준 기부총액은 256억원으로 전년의 92% 수준임.

법인은 전국적 단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할 경우 법인이 이를 준조세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 대상, 세액공제 범위, 기부의 상하한액, 기부금의 활용 방안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업관 고향납세’를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인기부 모델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한 제도설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고향사랑기금 전출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군·구에 전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금을 전출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협력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목적의 지정기부금의 성격을 갖는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은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고향사랑기금을 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실적이 부족하거나 격차가 큰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의 지역 발전 계획과 기초 단위의 현장 사업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사업 효과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기금 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